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754 가. 무고
나. 무고교사

피 고 인 1. 가. A
2. 나. B

검 사 염호영(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안종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A을 2019. 3. 29.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2019. 4. 26.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21. 9. 13.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와의 사이에 위 D로부터 경북 성주군 E 외 14필지를 총액 20억 원, 계약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2022. 2. 22. 위 D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계약금을 5억 원으로 특정하는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해서 연장된 기한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인상된 계약금 5억 원을 모두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위 계약금 재특정 합의서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의 명의로 작성된 점을 기회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계약금 재특정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으면서 그 대신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사실]

피고인 B은 2022. 7.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G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주거지 또는 그 일대에서, 피고인 A에게 'B이 2022. 2. 22.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A의 동의



없이 D와의 사이에 임의로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 재특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고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22. 2. 22.자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 재특정 합의서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작성하고 대표이사 날인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임의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2. 7. 25.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B이 2022. 2. 22. D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명의로 계약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종전 토지 매매계약서의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을 5억 원으로 특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A 몰래 A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9. 7., 10. 21., 11. 8., 2023. 5. 17. 4회에 걸쳐 같은 경찰서에서 그 소속 사법경찰리 경장 H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 B은 A을 교사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32, 33, 36)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민사소송 소장 및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¹⁾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19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A을 교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중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영식 _____